

# 서울대학교 근로장학금 관리지침

개정 2007. 2.27

개정 2007. 5.29

개정 2014.01.23.

개정 2014.07.16.

개정 2016.07.20.

개정 2019.01.29.

개정 2019.05.31.

개정 2020.01.01.

개정 2023.07.20.

## 1. 목적

학생에게 학내의 각종 업무 및 실습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장학금을 받는다는 교육적 의미를 부여하고, 근로의 참뜻을 자각하게 하여 건전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.

## 2. 대상자

가. 가계가 빈곤한 자 등으로 근로를 원하는 학생이나 교수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신청할 수 있다.

나. 유형 1 및 유형 2 : 학사과정 재학생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업무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학원생으로 대치할 수 있다.

다. 학사지원장학생 : 대학원 재학생(연구생 포함)을 원칙으로 하되 학사과정 학생을 예외로 대치할 수 있다.

## 3. 근로 내용

가. 전공지식을 현장에서 실습 또는 응용함으로써 학문의 실용성을 경험하게 한다.

나. 교과목 이수를 통하여 얻을 수 없는 다양한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한다.

다. 단순노력을 통하여 근로의 신성함을 체득함으로써 자기성장에 기여한다.

라. 근로 내용, 장소, 시간 배분, 전공연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기관장이 정한다.

#### 4. 근로장학생의 선정 및 배정

가. 근로장학생의 지원서를 받거나 지도교수가 추천하고, 학과장을 경유하여 당해 기관장이 최종 선발한다.

· 같은 부서에서 최대 4학기까지 근로할 수 있다. <개정 2023.07.20.>

나. 근로장학금 총액을 본부 및 대학에 각각 배분 후, 단과대학분에 대하여는 등록예정인원에 따라 배정한다.

다. 본부에는 본부 각과, 부속기관, 연구소, 학부가 없는 전문대학원, 대학신문사, 총학생회 간부 등 전체 학생을 위하여 봉사하는 학생 등을 포함한다.

#### 5. 성적제한 요건

근로장학생의 성적제한은 두지 아니한다.

#### 6. 근로 기간

근로 기간은 다음과 같다.

가. 제1학기(6개월) : 3월 ~ 8월

나. 제2학기(6개월) : 9월 ~ 익년 2월

#### 7. 이중수혜 제한 여부

타 장학금과 이중수혜가 가능하다.

#### 8. 근로 시간

가. 유형 1은 주당 10시간(월40시간), 유형 2는 주당 15시간(월60시간), 학사지원장학생은 주당 20시간 근로하여야 한다. 단, 공휴일은 제외한다.

나.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시간이 유형별로 정한 시간 미만일 때 당해기관의 장은 학생과 면담하여 계속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, 다음 달에도 계속 미달 시에는 교체한다.

다. 다음의 정당한 사유로 근무시간이 미달한 경우는 근무한 것으로 한다.

① 학사력에 의한 7일 미만의 답사와 실습. 단, 7일 이상의 교생실습은 제외한다.

② 대학 또는 학과에서 승인된 7일 미만의 행사, 집회 참가 시

③ 위의 사유가 있을 시에는 대학(원)장, 학과(부)장 또는 지도교수의 확인서를 당해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9. 근무상황부 비치 및 지도감독

근로장학생이 근무하는 기관은 근무상황부를 비치하여 성실하게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.

10. 근무상황보고

근로장학생 근무상황은 다음에 의하여 당월 28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.

가. 각 대학 실험실 및 연구소 근로장학생 근무상황은 관리책임자가 수합하여 보고하며,

나. 기타 근로처는 관리책임자가 보고한다.

11. 지급기준

가. 근로장학금의 시급단가는 최저시급과 국가근로장학금 시급단가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. <개정 2020.01.01.>

나. 월 기준 시간에 미달할 경우에는 월정장학금을 시간 계산하여 지급한다.

12. 지급방법

각 기관의 장은 근로장학생 학생 본인 예금계좌번호를 명시하여 청구하며, 장학금은 익월 초 근로장학생 예금계좌로 자동 입금된다.

부 칙 (2019. 01. 29.)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9. 05. 31.)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0. 01. 01.)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3. 07. 20.>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